

1 정답 ④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신설된 것은 제7차 헌법이 아닌 제8차 개정헌법이다. 박철한 헌법 52페이지 제5공화국편

2 정답 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지문에 있으니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견해대로 가야 한다. 이 사건 긴급조치들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에 정해진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주의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긴급조치들은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위헌 여부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2010헌바132) 박철한 2013년 최신판례 긴급조치편

3 정답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헌재 2003.11.27 2001헌바35)

4 정답 ②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헌재 2004.8.26. 2002헌가1)

5 정답 ③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므로(변호사법 제1조 및 제2조), 특허침해사건 소송대리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가 예외적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2.8.23. 2010헌마740)

6 정답 ①

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성질상 제한이 따른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데 인격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따른다.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사죄공고과정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1991.4.1. 89헌마160)이라고 하여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다.

7 정답 ④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건종결 전 일반적 압수물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설사 피압수자의 소유권포기가 있다 하더라도 폐기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수물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물건임이 명백함에도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사건종결 전에 폐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012. 12. 27. 2011헌마351)

8 정답 ①

-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헌법 제62조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은 이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제6차 개정헌법에서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2/3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현행 헌법은 제65조 제2항)
- ④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즉 대통령이 아닌 국회다.

9 정답 ①

- ② 그와 같은 차별을 한 이유는 부모의 중혼 여부에 대하여 자식이 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가부장적·종법제적인 사고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2010.07.29. 2009헌가8)
- ③ 입법자가 충돌·대립하는 다양한 헌법적 이익을 고려하여 세종시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기본권의 제한은 세종시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거나 세종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청구인의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2헌마131)
- ④ 헌법재판소는 2012년 11월 29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2005. 7. 29. 법률 제761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2.11.29. 2011헌마801)

10 정답 ④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말해주기 보다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 지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이 규정만 가지고는 도대체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2008.7.31. 2007헌가4)

11 정답 ①

-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88조 제2항)
- ④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22조)

12 정답 ④

- 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2007.1.12. 2005다57752)
- ㄷ. 석방요구는 과거 20인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국회의원 재적 1/4이상으로 개정되었다.
- ㄹ. 면책 특권은 국회외에서 형사·민사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징계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회외에서 민사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13 정답 ②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사면법 제10조 제1항)

14 정답 ②

원장이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원법 제4조 제3항)

15 정답 ②

- ①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가 아닌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한다. (헌법 제76조 제2항)
- ③ 국가긴급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이를 발할 수는 없다.
- ④ 재정·경제처분도 당연히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헌법 제76조 제3항)

16 정답 ④

- ① 국회의원이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는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이며,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재 2007.7.26. 2005헌라8)

- ② 학교법인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이 제기한 각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에서 전라북도교육감이 한 위 각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각 취소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이를 시정대상으로 하던 위 각 시정명령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더이상 위 각 시정명령에 따를 법적 의무, 즉 위 각 취소처분을 시정할 의무나 위 각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위 각 취소처분이 취소·정지될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권리침해상태가 이미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적법요건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헌재 2011.8.30. 2010헌라4)
- ③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종래 구세였던 재산세를 구와 특별시의 공동세로 변경하였는데,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구의 재산세 수입이 종전보다 50% 감소하게 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서울특별시세조례에 의하여 특별시분 재산세가 각 자치구에 배분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종전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청구인들의 재산세 수입 비율은 50% 미만일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제정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10. 10. 28. 2007헌라4)

17 정답 ①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을 위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송달 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헌재 2012. 11. 29. 2012헌마53)

18 정답 ③

- ①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반드시 예외가 없다는 것으로 단서 규정 때문에 오답이다.
- ②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호)
- ④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원조직법 제16조 제2항)

19 정답 ②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현실을 볼 때,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는 지구당이라는 정당조직에 너무나 뿌리 깊게 고착되어 양자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구당을 폐지하지 않고 위와 같은 보다 완화된 방법만을 채용하여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할 당시의 우리나라 정당정치 현실에 대한 입법자의 진단이고, 이러한 진단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4.12.16, 2004헌마456)

20 정답 ④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될 것
이므로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
할 수는 없고 결국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
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
석의 원칙상 한정적으로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
헌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면서도 불
가피한 결론이고,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
구 또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 (2012.12.27. 2011헌바117)

일단 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해설과 총평은 곧바로 다시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